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6. 30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 당 자	• 과장 신광호, 사무관 김관식, 주무관 강운빈 • ☎ (044) 201-3432, 3452	
	첨단자동차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문수, 사무관 김진우, 주무관 최형준 • ☎ (044) 201 - 3934, 3854	
	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	담 당 자	• 팀장 김기훈, 서기관 김용성, 사무관 임승규 • ☎ (044) 201-4861, 4761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가능합니다		

「감정평가법」·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·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감정평가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(감정평가법) 개정안, 자율협력주행* 인증관리체계**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,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·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, 「감정평가법」 개정안은 작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“감정평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”을 반영한 것으로, 작년 11월 김희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,
- 감정평가와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-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이로만 발급해 왔던 감정평가서를 편리하게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·발송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.
 - 감정평가법인은 구성원의 30% 이내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토지 등의 전문가도 사원 또는 이사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다양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.
 -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(다만, 감정평가업 등록 결격사유는 유지), 감정평가 사무소 개설 신고의무도 폐지된다.
 - 감정평가사는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, 감정평가 의뢰인은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.
 - 감정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시 감정평가 의뢰인 등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또한,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감정평가사, 감정평가법인, 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.
-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국토부는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.
- 다음으로,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개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에 중요한 자율협력주행* 인증관리체계**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자동차가 혼자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에 C-ITS를 활용한 협력주행이 연계되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혹은 인프라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

** 인증서(등록, 보안)를 발급받은 차량과 인프라만 교통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체계

① 인증관리센터 설치·운영

-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 대해 관리·감독을 하는 등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- 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

-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·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인증관리기준 고시 및 인증업무준칙 작성

- 국토교통부는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, 인증서의 유효기간, 수수료의 금액 등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인증관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서 인증서 발급, 폐지 등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

- 국토교통부는 인증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인증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

- 인증기관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미준수한 경우 국토부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

- **인증업무 정지처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정지로 인하여 인증관리체계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처분을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.**

□ 이번에 개정된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차량과 인프라 간의 안전한 통신과 상호운영성을 보장할 인증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되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□ 마지막으로,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 보험진료수가기준 마련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·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음주운전·무면허운전·뺑소니 사고부담금 강화

- 음주운전·무면허 운전·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.
-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,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발표한 「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」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바 있다.

〈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〉

(현행) 사고부담금 한도(단위 : 원)		(개정) 사고부담금 한도(단위 : 원)
○ 음주운전		○ 음주·무면허·뺑소니
- 의무보험 : 대인 1천만, 대물 5백만		- 의무보험 :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
- 임의보험 : 대인 1억, 대물 5천만	⇒	- 임의보험 : 대인 1억, 대물 5천만
○ 무면허·뺑소니		* 임의보험 한도 추가 상향은 금융위·금감원 협의·검토를 통해 추진 (표준약관 개정사항)
- 의무보험 : 대인 3백만, 대물 1백만		
- 임의보험 : 대인 1억, 대물 5천만		

② 자동차 낙하물 사고를 정부보장사업* 대상에 포함

* 무보험·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는 제도

- '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해당 차량으로부터 낙하된 물체(예: 화물차 판스프링, 골재 등)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'를 새롭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하여,

* (현행) 무보험, 뺑소니 사고 → (개정) 무보험, 뺑소니 + 차량 낙하물 사고

-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 대상을 확대한다.

③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 선제발굴 및 지원금 압류·양도 금지

-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추가*한다.

* (현행) 경찰청장, 지자체, 보험요율산출기관 →

(개정) 행정안전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 추가

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주요내용 〉

구 분	주 요 내 용
지원대상	▶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본인, 사망자·중증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지원내용 (경제적지원)	▶ ①재활·피부양 보조금(월 22만원), ②자립지원금(월 7만원 매칭적립), ③장학금(분기 30만원), ④생활자금 무이자대출(월 20만원)

- 또한,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 보조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.

④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기능 확대

-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'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*'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여, 진료수가 기준 마련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구성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7조)

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의 자료수집 범위·대상기관 확대

-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범위를 주민등록·출입국관리 등으로 확대하고, 대상기관도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,
- 진료기록 등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.

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 증원

-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·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를 기존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증원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.
- ☐ 이번에 개정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음주·무면허·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관련 개정사항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☐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고,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과 추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관식 사무관(☎ 044-201-3432), 첨단자동차과 김진우 사무관 (☎ 044-201-3934),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용성 서기관, 임승규 사무관(☎ 044-201-4861, 476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